

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104065 판결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1282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104065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진안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장정훈

변론 종결2023. 4. 27.

판결 선고2023. 5. 2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4,359,511,061원 및 그 중 12,162,261,061원에 대하여는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 2,197,2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6.부터 2023. 5.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00,178,971원 및 그 중 13,108,357,849원에 대하여는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 1,491,821,122원에 대하여는 2020. 12.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약칭 'ESS')을 제조·공급 및 설치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시스템 및 구조물 제조업,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 D, E, F, G, H, I, J,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는 강원 철원군 ○ 및 공주시 P에서 각 태양광 발전소 설비와 ESS 설비를 구축하고, 그로부터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시행 법인들이다(을 제1호증의1~12). 철원군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는 주식회사 C, D, E, F, G, H, I, J, K, L, 주식회사 N가 참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이라고 한다), 공주시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는 주식회사 N가 참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에 관한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9.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터리와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고, ESS 설비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36,300,000,000원, 지연손해금은 '지체일수에 지체된 대금의 1/1,000을 곱한 금액', 공사완료예정일은 2020. 2. 28., 대금지급일은 선수금은 금융약정일부터 7일 이내, 잔금은 사용전검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설치장소는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의 태양광발전소 지정장소(강원도 철원군 Q리 일대)로 정하였다(갑 제1호증).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에 관한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 체결

원고는 2019.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 별로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터리와 PCS를 공급하고, ESS 설비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ESS 물품구매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을 각각 다시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각 2,42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설치공사계약의 경우 각 605,000,000원, 납품예정일은 2020. 2. 28., 대금지급일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잔금은 배터리, PCS 납품 완료시 45일 이내, 설치공사계약의 경우 선금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잔금은 사용전검사 완료시 30일 이내로 정하였다(갑 제2호증의1~12, 갑 제3호증의 1~12)

라. 원고의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에 관한 배터리, PCS 납품 완료

원고는 2019. 12. 30.까지 전항 기재 ESS 물품구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 별로 배터리와 PCS를 모두 납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직원이 납품된 제품을 검수하고 이에 대한 입고 확인증을 작성해주었다(갑 제7호증의1).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에 관한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 1차 변경계약 및 2차 변경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1. 다.항 기재 ESS 물품구매 계약의 대금 액수를 각 2,420,000,000원에서 각 2,200,000,000원으로, ESS 설치공사 계약의 대금 액수를 각 605,000,000원에서 각 82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 5호증).

2) 원고와 피고는 2020. 2. 28. 전항 기재 ESS 설치공사 계약의 납기일을 2020. 2. 28.에서 2020. 6. 30.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에 관한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 체결

원고는 2020.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터리와 PCS를 공급하고, ESS 설비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ESS 물품구매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1,925,000,000원, 설치공사계약의 경우 660,000,000원, 납품예정일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2020. 4. 30., 설치공사계약의 경우 2020. 6. 30., 대금지급일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1차 대금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2차 대금은 배터리, PCS 납품 후 30일 이내, 3차 대금은 배터리, PCS 납품 후 90일 이내, 설치공사계약의 경우 선금금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1차 준공금은 사용전검사 후 30일 이내, 잔금은 사용전검사 후 90일 이내로 정하였다(갑 제2호증의13, 갑 제3호증의13)

사. 원고의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에 관한 ESS 설치 완료

원고는 다. 항 및 마.항 기재 ESS 설치 계약에 따라 2020. 3. 11.부터 2020. 7. 12.까지 이 사건 각 철원 사업시행법인 별로 ESS 설비를 모두 설치해주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까지 완료되었다(갑 제8호증의 1~12).

아. 원고의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에 관한 배터리, PCS 납품 및 ESS 설치 완료

원고는 2020. 3. 20. 바.항 기재 ESS 물품구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에 관하여 배터리와 PCS를 모두 납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직원이 납품된 제품을 검수하고 이에 대한 입고확인증을 작성해주었다(갑 제7호증의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주사업시행법인에 관하여 ESS 설비도 설치해주어, 2020. 3. 30.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까지 완료되었다(갑 제8호증의13).

자.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지급

1) 피고는 2020. 1. 6.부터 2020. 3.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18,017,750,000원(= 3,630,000,000원 + 8,000,000,000원 + 6,000,000,000원 + 387,750,000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2) 주식회사 R, M, N는 2020. 9. 29.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14,719,400,000원(= 985,100,000원 + 1,910,800,000원+ 2,232,800,000원 + 2,116,750,000원 + 1,707,900,000원 + 5,766,050,000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1	2020-01-06	3,630,000,000원	피고	갑 제16호증 1면	선금
2	2020-02-28	8,000,000,000원	피고	갑 제16호증 2면	
3	2020-03-13	6,000,000,000원	피고	갑 제16호증 3면	
4	2020-03-30	387,750,000원	피고	갑 제16호증 4면	선금
5	2020-09-29	985,100,000원	(주)R	갑 제16호증2 1면	
6	2020-10-08	1,910,800,000원	(주)M	갑 제16호증2 2면	
7	2020-12-10	2,232,800,000원2,116,750,000원	(주)R	갑 제16호증2 3면갑 제16호증2 4면	
8	2020-12-11	1,707,900,000원	(주)N	갑 제16호증2 5면	
9	2021-06-25	5,766,050,000원	(주)R	갑 제16호증2 6면	
합계	32,737,1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8, 1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과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에 관한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전항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에 관하여 배터리와 PCS를 납품하여 피고로부터 검수를 받았고, ESS 설비도 설치해주어 사용전검사까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③ 원고가 전항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항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통정허위표시 주장 :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인정 사실 나.항, 갑 제1호증),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인정 사실 다.항, 갑 제2, 3호증)을 각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계약은 원고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와 피고,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은 2020. 3. 10. 및 2021.경 '변경공사도급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을 제2호증의1~12, 을 제13호증의1~5), 이 계약에는 도급인이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 수급인이 원고, 피고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진정한 계약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도급인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대리 관련 주장 :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에는 이 사건 각 사업시행 법인이 피고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 계약의 효력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에 미친다.

3) 공사대금 감액 주장 :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Usable 용량이 90,000Wh 이상인 배터리를 공급했어야 하나, 실제로 공급한 배터리의 합계 Usable 용량은 84,841.78Wh에 불과하므로, 미달용량인 5,158.22Wh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금($36,300,000,000\text{원} \times 5,158.22/90,000$)이 용역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4) 지체상금 감액 주장 :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체일수에 지체된 대금의 1/1,000을 곱한 금액'으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연 이율이 연 36.5%에 달하는 고율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5) 동시이행 항변 :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등 예치 의무와 도급인의 용역대금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와 채택 증거에 갑 제13, 18, 20~2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산업은행에 대한 2022. 6. 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2022. 7. 20.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법무법인 S에 대한 2022. 8. 2.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급인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에 따라 이행 행위를 하여왔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 ESS 물품구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에 관하여 배터리와 PCS를 공급하였는데, 납품된 배터리와 PCS는 모두 피고의 직원에 의해 검수되었고, 피고의 직원 명의로 입고확인증이 작성되었다(갑 제7호증의1, 2).

나) 원고와 피고는 납품된 배터리와 PCS에 관하여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0. 3. 16. 'ESS 물품구매 계약변경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였는데(갑 제13호증), 이 합의서에는 납품물의 소유권이 납품확인과 동시에 수급인인 원고로부터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관리운영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34,491,125,000원을 지급받았고(이 법원의 산업은행에 대한 2022. 6. 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2022. 7. 20.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2022. 8. 17.자 원고 준비서면 12면), 그 돈으로 2020. 1. 6.부터 2020. 3.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18,017,750,000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지급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에 관하여 공급하는 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갑 제20~23호증).

라) 원고는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20. 7. 10.경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는 대출발생일 익일에 공사대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역시 대출발생일 익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을 통지드린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갑 제18호증).

마) 피고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 사이에 2020. 3. 10. 및 2021.경 도급인이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 수급인이 원고, 피고로 되어 있는 '변경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와 채택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금융기관에서 신용도가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PF대출 성사를 위해 신용도가 높은 원고가 수급인으로 되어있는 변경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무법인 S에 대한 2022. 8. 2.자 사실조회회신 제6, 9항 참조), ② 앞서 다)항에서 언급한 2020. 3. 16. ESS 물품구매 계약변경 합의서에도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에 '붙임서류2'로 첨부되어 있는 공동수급협정서(원고와 피고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를 '삭제'한다고 되어있고, 금융약정을 위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별도로 체결한다고 되어있는 점(갑 제13호증 1면), ③ 2020. 3. 10. 변경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납품한 배터리와 PCS를 검수하였고(갑 제7호증의2),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비추어, 변경공사도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정한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1)항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각 수급인, 도급인으로서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이행 행위를 해왔고, 위임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들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금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와 채택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요구하는 배터리의 합계 Usable 용량에 미달하는 배터리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SS 배터리는 통상적으로 그 설치 용량에 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이 3~4% 적을 수 있는데,

이를 Usable 용량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배터리의 합계 Usable 용량이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정한 배터리의 합계 Usable 용량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설치한 배터리의 합계 Usable 용량의 실측치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설치한 배터리의 설치 용량 등에 일정 배수를 곱하여 계산한 추산치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다(2022. 8. 12.자 피고 준비서면 10, 11면).

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설치한 ESS 배터리의 합계 Usable 용량이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정한 배터리의 합계 Usable 용량에 미달한다고 해도,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정한 대금에는 배터리 대금뿐만 아니라 PCS 대금, ESS 설비 설치 용역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의 대금 전체에서 배터리의 용량이 미달하는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지체상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와 채택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피고의 대금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체일수에 지체된 대금의 1/1,00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는데(갑 제1호증 붙임서류1 10면), 지체상금이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기한에 관한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점, 그리고 지체일수 대비 1/1,000 정도가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체상금 비율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 정한 지체상금 비율이 다른 계약에 비해 부당하게 높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참조).

나) 원고와 피고는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에서 원고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준공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일당 1.5/1,00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갑 제1호증 붙임서류1 5면), 이는 피고의 대금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율보다 더 높은 비율이어서, 여기에 대비해 보아도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관리운영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34,491,125,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합계 18,017,750,000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데,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체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액수가 크고, 지체 기간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는데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5)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해도 도급인이 지급할 공사대금이 수급인이 납부할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 부분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도급인은 미지급공사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차액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69235, 6924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864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와 채택 증거들에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SS 물품구매계약(갑 제2호증, 붙임서류1 4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의 검수완료와 동시에 물품대금액수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금율 5%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모두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29호증의1~12).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주식회사 C에 관한 ESS 물품구매계약(갑 제2호증의1)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110,000,000원 = ESS 물품구매 1차 변경 계약 대금 2,000,000,000원(갑 제4호증 1면) × 1.1(부가세) × 5%] 부분에 관해서만 이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의 도급인은 피고이므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C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동안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최초로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할 때 주식회사 I, L, M에 관해서는 각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은 점(2022. 11. 11.자 피고 준비서면 6면)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이 발행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청구의 인용범위

가.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은 이 사건 각 사업시행법인 별로 체결된 ESS 물품구매 계약 및 ESS 설치공사 계약, 그 계약의 1차 변경 계약(대금 및 대금지급일 변경), 배터리, PCS의 납품일과 ESS 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일자에 따라 각각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율이 다르다.

나. 우선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ESS 물품구매 및 ESS 설치공사 계약의 선금은 3,630,000,000원[= ESS 물품구매 1차 변경 계약 선금 20,000,000원(갑 제4호증) × 1.1(부가세) × 12개 사업시행법인 + ESS 설치공사 1차 변경 계약 선금 255,500,000원(갑 제5호증) × 1.1(부가세) × 12개 사업시행법인]인데, 원고가 선금의 이행기 내인 2020. 1. 6. 이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변제충당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ESS 물품구매계약 잔금의 경우 원고가 2019. 12. 30. 배터리와 PCS를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45일이 지난 2020. 2. 13. 잔금 26,136,000,000원[= ESS 물품구매 1차 변경 계약 잔금(갑 제4호증) 1,980,000,000원 × 1.1(부가세) × 12개 사업시행 법인]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③ ESS 설치공사 계약 잔금의 경우 원고가 ESS 설비를 설치해 주고 2020. 3. 11.부터 2020. 7. 12.까지 사용전검사를 받았으므로 각 사용전검사일부 터 30일이 지난 날 각 잔금 544,500,000원[= ESS 설치공사 1차 변경 계약 잔금 495,000,000원(갑 제5호증) × 1.1(부가세)]의 이행기가 도래한다.2) ④ 그리고 각 대금채권에 대하여 일 1/1,000, 즉, 연 36.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②항 기재 2020. 2. 13. 이행기가 도래한 ESS 물품구매계약 잔금 26,136,000,000원 중 하자보수보증금에 상응하는 110,000,000원의 대금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인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26,026,000,000원(= 26,136,000,000원 ~ 110,000,000원)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ESS 물품구매 및 ESS 설치공사

계약의 선금은 387,750,000원[= ESS 물품구매 계약 1차 대금 262,500,000원(갑 제2호증의 13) × 1.1(부가세) + ESS 설치공사 계약 선금금 90,000,000원(갑 제3호증의13) × 1.1(부가세)]인데, 원고가 선금의 이행기 내인 2020. 3. 30. 이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변제충당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ESS 물품구매계약 잔금의 경우 원고가 2020. 3. 20. 배터리와 PCS를 납품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30일이 지난 날인 2020. 4. 19. 2차 대금 673,750,000원[= ESS 물품구매 계약 2차 대금 612,500,000원(갑 제2호증의 13) × 1.1(부가세)]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20. 6. 18. 3차 대금 962,500,000원[= ESS 물품구매 계약 3차 대금 875,500,000원(갑 제2호증의13) × 1.1(부가세)]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③ ESS 설치공사 계약 잔금의 경우 원고가 ESS 설비를 설치해주고 2020. 3. 30. 사용전검사를 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30일이 지난 날인 2020. 4. 29. 1차 준공금 231,000,000원[= ESS 물품구매 계약 1차 변경 계약 준공금 210,000,000원(갑 제3호증의13) × 1.1(부가세)]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20. 6. 28.에 330,000,000원[= ESS 설치공사 1차 변경 계약 잔금 300,000,000원(갑 제5호증) × 1.1(부가세)]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며 각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과 관련해서는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으나, 회사로서 상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 6.부터 2020. 3. 30.까지 합계 18,017,750,000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주식회사 R, M, N로부터 2020. 9. 29.부터 2021. 6. 25.까지 합계 14,719,400,000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변제받았고,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변제받은 금액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이행기가 도래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에 민법에 의한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 결과는 [별지]와 같고, 그 잔액은 ① 지연손해금율 연 36.5%가 적용되는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원금 12,162,261,061원,4) ②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원금 110,000,000원, ③ 지연손해금율 연 6%가 적용되는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원금 2,197,250,000원5) 합계 14,469,511,061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14,469,511,061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인 110,000,000원을 공제한 14,359,511,061원 및 그 중 12,162,261,061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 다음날인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체상금 비율에 따른 연 36.5%, 나머지 2,197,25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 다음날인 2021.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3. 5.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C에 관한 ESS 물품구매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인정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석천

판사박주원

판사서성기

별지

1) 한편, ESS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잔금은 납품검사 완료 시 45일 이내(갑 제2호증의 1~12) 또는 90일 이내(갑 제2호증의 13)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에서 실시하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I, J에 관한 ESS 설비 사용전검사가 2020. 3. 11.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30일이 지난 2020. 4. 10. 그 용역대금 합계 1,089,000,000원(= 544,500,000원 × 2)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갑 제 8호증의 7, 8). 주식회사 K, N에 관한 ESS 설비 사용전검사가 2020. 3. 20.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30일이 지난 2020. 4. 19. 그 용역대금 합계 1,089,000,000원(=

544,500,000원 × 2)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갑 제8호증의9, 11). 주식회사 L, M에 관한 ESS 설비 사용전검사가 2020. 3. 26.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30일이 지난 2020. 4. 25. 그 용역대금 합계 1,089,000,000원(= 544,500,000원 × 2)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갑 제8호증의 10, 12). 주식회사 G, H에 관한 ESS 설비 사용전검사가 2020. 6. 19.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30일이 지난 2020. 7. 19. 그 용역대금 합계 1,089,000,000원(= 544,500,000원 × 2)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갑 제8호증의5,6). 주식회사 F에 관한 ESS 설비 사용전검사가 2020. 6. 22.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30일이 지난 2020. 7. 22. 그 용역대금 544,5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갑 제8호증의4). 주식회사 C에 관한 ESS 설비 사용전검사가 2020. 7. 12.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30일이 지난 2020. 8. 11. 그 용역대금 544,5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갑 제8호증의 1).

3) 원고는, 이 사건 철원 사업시행법인 관련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채무에 지연손해금 약정(연 36.5%)이 존재하여 그 변제이익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민법 제477조 제2호), 주식회사 N가 2020. 12. 11. 변제한 1,707,900,000원 중 777,000,000원이 이 사건 공주 사업시행법인 대금채무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변제충당에 우선하는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5,628,261,061원 + 1,089,000,000원 + 1,089,000,000원 + 1,089,000,000원 + 1,089,000,000원 + 1,089,000,000원 + 544,500,000원 + 544,500,000원

5) 673,750,000원 + 962,500,000원 + 231,000,000원 + 330,000,000원